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5-103호

2015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(2개분야)

<법률지원 전문관,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전문요원>

2015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중 **'법률지원 전문관,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전문요원'**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21일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 <근무부서>	임용직급	인원	임기	근무시간	담 당 업 무
법률지원 전문관 <법무담당관> [재공고]	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	2명	2년	주 32시간	○ 자치입법 지원, 소송수행 및 지도 ○ 실·국별 법률자문 ○ 도정 관련 법률현안 발생시 대응
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전문요원 <공정경제과> [재공고]	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	1명	2년	주 35시간	○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·자문 ○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및 불공정거래 조정, 소송지원 업무 등

※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※ 재공고 사유 : 제15회 임기제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 없음

2. 법령근거

○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○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42조의3
○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)
○ (지방)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○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, 별표 6의2

3. 응시자격

○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주소지·성별·연령은 제한 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※ 개정된 민법(2013.7.1.시행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

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	자 격 기 준
법률지원 전문관 〈법무담당관〉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	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*※ 추가 필수자격 요건** •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**※ 관련분야 경력** : 법무관련 근무경력
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전문요원 〈공정경제과〉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	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*※ 추가 필수자격 요건** •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**※ 관련분야 경력** : 법률상담,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경력 **※ 우대사항** : 대·중소기업,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상담, 소송 경력

※ 「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」 별표6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.

4. 보수수준

○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)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

임용직급	임용예정 분야	상한액	하한액
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	법률지원 전문관(32시간)	-	42,044천원
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	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전문요원 (주35시간)	-	45,986천원

○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5. 9. 14.(월) ~ 9. 16.(수) <3일간>

  ※ 근무시간(09:00~18:00)내 접수 <중식시간(11:40~12:40) 제외>

- 접수장소 :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(도청 후문 옆 건물 2층)

  ※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(매산로3가)

- 접수방법 : 방문제출 (대리접수는 가능,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)

 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

< 원서접수처(인재채용팀) 약도 >

<경기도청 청사 배치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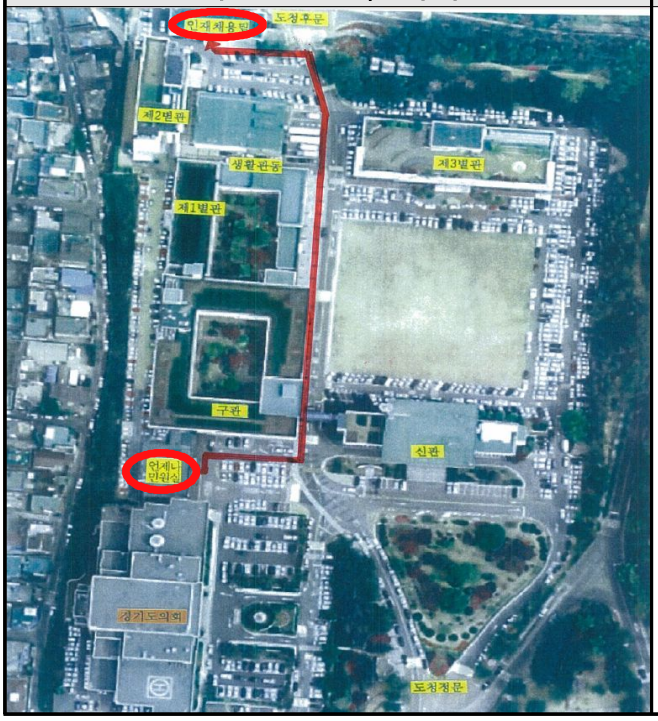

< 경기도청 약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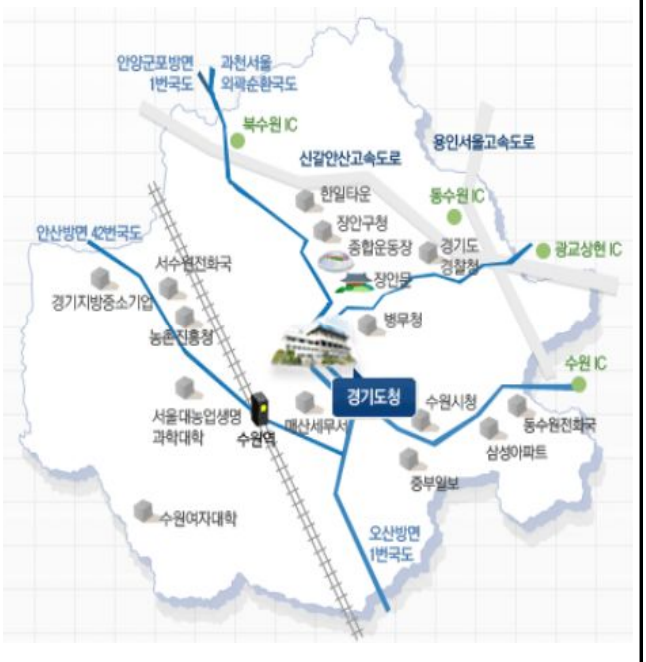

※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 접 시 험		최종합격자 발 표
	일 시	장 소	
2015. 9. 23.(수) 전·후	2015. 10. 1.(목) 전·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	2015. 10. 5.(월) 전·후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(exam.gg.go.kr)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.

○ 시험방법

- 1차시험(서류전형) :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(학력, 경력요건 등) 심사
 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2차시험(면접시험) :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
  ·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  ·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'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'시 알림

※ **추가합격자 결정 :**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 <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>

※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

① **응시원서** 1부. (별지1호 서식)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
- 응시수수료 : 경기도수입증지 첨부(5급, 가급 : 1만원 // 6·7급, 나·다급 : 7천원 // 8·9급, 라·마급 : 5천원)
  ☞ 응시원서 제출 전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

② **이력서** 1부. (별지2호 서식) <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>

③ **자기소개서** 1부. (별지3호 서식) <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>

④ **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** 1부. (별지4호 서식)

⑤ **직무수행계획서** 1부. (별지5호 서식)

⑥ 학사(전문학사 포함)학위 이상 전체 **졸업(재학)증명서** 각 1부.
-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

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**경력증명서** 각 1부.
-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,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.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. (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)
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(시간제 포함)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. 프리랜서·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.

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. **(해당자만 제출)**

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, 외국어능력·정보화 자격증 등. **(해당자만 제출)**
-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
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, 어학능력성적표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.

⑪ **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**(별지6호 서식)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(중복표시 가능).

⑫ **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.**

7. 기타 유의사항

○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○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
○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

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해당분야는 재공고 합니다.

○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서류의 기재착오,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○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인사과 인재채용팀 (031-8008-4046)

▶ 직무내용 관련 문의

임용예정분야	근무부서	연 락 처
법률지원 전문관	법무담당관	031-8008-2874
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전문요원	공정경제과	031-8030-2962

***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***